

August 25, 2020

Legal Update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2020. 8. 18)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 8. 18.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령은 지난 2020. 3. 24. 개정(2020. 6. 1. 시행)된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위 개정령 내용 중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중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 기준, 배출권할당단위 변경(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에 따른 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 배출권 할당신청서에 첨부하는 활동자료량 ·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강화 등 사업자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 변화

2차계획기간 동안에는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 및 △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에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하였으나, 본건 개정을 통해 무상할당 기준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발생이 많은 곳에 한하여 무상할당이 이뤄지도록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업종이 종전 26개에서 40개로 확대되었고, 대표적으로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이 유상할당 업종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비용발생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아래의 산식을 통해 산정함.

$$\frac{(\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무역집약도: 해당 업종의 무역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아래의 산식을 통해 산정함.

$$\frac{(\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2] 배출권할당단위 변경(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에 따른 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 마련

2020. 3. 24.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배출권의 할당(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포함) 단위가 ‘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본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사업장 내 시설이 신설 또는 증설 되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추가 할당 기준),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할당 취소 기준), 사업장 별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사업장 내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하여 보다 유연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러 업종간 시설의 양도나 임차를 통하여 배출권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활동자료량,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검증에 관한 사항 강화

본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 작성·제출 시 첨부하는 활동자료량* 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 의무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활동자료량의 경우, GF 할당 방식(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할당 방식)에서 BM 할당방식(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에 한하여 제출 의무 부담.

환경부는 내달 중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확정되는 할당계획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환경팀은 기업체들의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응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정수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345

E. syjung@shinkim.com



황성익

파트너변호사

T. 02-316-4417

E. sihwang@shinkim.com



류재욱

파트너변호사

T. 02-316-1635

E. jwryu@shinkim.com



김규민

소속변호사

T. 02-316-4412

E. gm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